##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124 발의연월일: 2025. 4. 25.

발 의 자:정일영·허성무·김 윤

박지혜 • 유동수 • 김교흥

김문수・맹성규・노종면

이훈기 • 허종식 • 정동영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·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,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.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.

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. 해사 법률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,000~5,00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,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인천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그 관할로 함(안 제2조제1항, 제4조제9호, 별표 1 및 별표 11).

#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1012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####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특허법원, 지방법원"을 "특허법원, 해사전문법원, 지방법원"으로 한다.

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구역: 별표 11

별표 1의 특허법원란 다음에 해사전문법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해사전문법원	인천광역시

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전문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전문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.

# [별표 11]

###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구역

명칭	관할구역
해사전문법원	전국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치) ① 고등법원, <u>특허법</u>	제2조(설치) ① <u>특허법</u>
원, 지방법원, 가정법원, 행정법	원, 해사전문법원, 지방법원
원, 회생법원과 지방법원의 지	
원(支院) 및 가정법원의 지원을	
별표 1과 같이 설치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관할구역) 각급 법원의 관	제4조(관할구역)
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	
따라 정한다. 다만, 지방법원	<u>-</u>
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	
•군법원을 둔 경우 「법원조	
직법」 제34조제1항제1호 및	
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	
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	
에서 해당 시・군법원의 관할	
구역을 제외한다.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9.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구역:
	<u>별표 11</u>